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전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5호중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면제대상) (생략)</p> <p>1. -4 (생략)</p> <p>5. <u>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u></p> <p> </p> <p>〈신 설〉</p>	<p>제2조 (면제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1. -4</p> <p>5. <u>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u></p> <p>② <u>제1항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p>

한국노동교육원법 (부분발췌)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산업평화를 이룩함으로써 노사 공존공영 이념을 구현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한국노동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사회교육법 (부분발췌)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교육"이라 함은 다른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사회교육시설"이라 함은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부분발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라 함은 인류, 역사, 고고,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 연구하여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 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라 함은 박물관으로서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 연구하여 문화, 예술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